대전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1379호

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7일

대전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

1 법적 근거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 4 (개방형직위)
○ 「지역보건법」 제15조 (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)
○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 (보건소장)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」
○ 「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

2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채용인원	임용기간	근무부서
동 구 보건소장	지방일반임기제(개방형 4호) 또는 지방기술서기관	1명	임용일로부터 2년	보건소

※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3 임용 신분

○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

▸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임용 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

※ 경력직공무원이라도 전보·승진·전직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

○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

▸ 임용 당시 응시자격을 갖춘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)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·경력경쟁임용·전입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
4 응시 자격

(※ 적용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가. **공통요건**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으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▸ 응 시 연 령 :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

▸ 지역, 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)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※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임용 자격요건 (필수요건 및 경력요건)

구 분		자 격 기 준
필수요건		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
경력요건	학력기준 (관련학과)	【석사학위 이하인 자】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【박사학위 소지자】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
	자 격 증	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
	공무원 경력	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	민간 경력	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

※ 유의사항

1. 자격기준일: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
2.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3. 학력기준은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
4. 관련분야(학과) 범위: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분야
5. 경력요건의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함.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   -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(근무기간,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)
   -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 (주40시간 기준)

5 시험 방법

가. 1차 형식요건 심사 (서류전형)

▸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,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적격성 심사 (서류심사와 면접시험)

▸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개별면접을 통한 적격성 감사

▸ 평가요소: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

※ (부적격 결정기준) 적격성 심사에서 **능력요건의 평균점수가 만점(100점)의 60%(60점)미만으로 평가된 응시자**는 부적격으로 결정하여 선정 제외

다. 최종합격자 발표

- 개별통보 및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go.kr) 공고

6 시험 일정

응시 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 표
11. 30.(월) ~ 12.. 4.(금) 09:00 ~ 18:00 / 5일간 ※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	12. 9.(수) / 예정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	

※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(www.donggu.go.kr/동구소식/채용공고)에 게시

7 보수 수준

○ **경력직 공무원**으로 임용되는 경우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

○ **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**으로 임용되는 경우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, 자격,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[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의 연봉액]

(단위: 천원)

연봉등급	적 용 대 상	연 봉 (하한액)	비 고
4호	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	70,490	

※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※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(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)

8 주요 업무내용

○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

○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

○ 국가예방접종 사업 및 지역보건법에 관한 사항

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○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○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

○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

○ 진료 및 일반민원 접수·발급에 관한 사항

○ 그 밖에 응급의료,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기타 보건소 관련 사무

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교부 및 접수처: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(10층)

[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(가오동), 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)]

※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접수함 /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

※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

나. 접수방법: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 / 접수마감일 근무시간(18:00) 소인분까지 인정

※ 우편 발송 시, 필히 담당자에게 전화 바람 (☎ 042-251-4125)

다. 제출서류

※ 스테이플러, 띠지 등 사용 금지

① **응시원서 1부.** (별지 제1호)

※ **응시수수료** : (5급 이상) 10,000원 상당액의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첩부 (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)

※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
② **이력서 1부.** (별지 제2호)

▶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(증빙자료 없을 시 경력 미인정)

③ **자기소개서 1부.** (별지 제3호)

④ **직무수행계획서 1부.** (별도서식 없음, 별지 제4호 참고하여 작성)

⑤ **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** (별지 제5호)

⑥ **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** (별지 제6호)

⑦ **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** (별지 제7호)

⑧ **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.** (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)

⑨ **관련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1부.** (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원본 또는 사본)

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상세히 기재된 경우에 인정 / 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)
- 근무기간 및 임용분야 자격요건과 맞는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의 관련분야 경력여부(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)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

※ 발행기관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.

※ 시간제(비상근) 근무의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기재(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/ 전일근로 기준: 40시간(하루 8시간))

주의 사항	◑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에는 (별지 8호) 「경력사실 확인 증명서」 반드시 추가 제출

⑩ **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**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) / 경력 확인용

⑪ **자격(면허)증 사본 1부.**

⑫ **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(자격증, 상훈, 연구실적 등) /** 논문, 저서 등은 A4 3매 이내 국문요지 첨부

⑬ **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.** (별지 제9호)

⑭ **제출서류 총괄표**

※ **모든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이 원칙이며,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(졸업, 경력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**

10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 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. (원본 서류의 경우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 반환 가능)

※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단,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
다.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라. **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, 대전광역시 동구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,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,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**

마.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.

바.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사.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명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,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바랍니다.

아.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(☎ 042-251-412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부.

붙 임 | **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**

Ⅰ. 기본사항

1. 소속기관	2. 직위명	3.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	4. 보직가능 직급
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	보건소장	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	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(개방형4호)

5. 주요업무 내용	비 중
①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	10%
② 감염병의 예방·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	10%
③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	10%
④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	10%
⑤ 의료기사·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	5%
⑥ 공중보건의사,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	5%
⑦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관한 사항	5%
⑧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	5%
⑨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	5%
⑩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	5%
⑪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	5%
⑫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	5%
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	5%
⑭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	5%
⑮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	5%
⑯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·증진 및 연구 등의 사업	5%

6. 관련분야

▶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분야

7. 필요지식 및 기술

▶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분야에 필요한 지식
▶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보건행정 전문가
▶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 전문가

Ⅱ. 직무수행요건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1. 임용자격 요건</th></tr>
<tr><td>가. 필수요건</td><td>① 필수 자격증 ■ 유 □ 무 (※ 응시자격: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)
② 기타 필수요건 □ 유 ■ 무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나. 경력요건</td><td>1) 경력요건(관련학과)</td></tr>
<tr><td>〈 석사학위 이하인 자 〉
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

〈 박사학위 소지자 〉
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</td></tr>
<tr><td>2) 자격증 요건</td></tr>
<tr><td>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</td></tr>
<tr><td>3) 공무원 경력요건</td></tr>
<tr><td>▷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▷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td></tr>
<tr><td>4) 민간 경력요건(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)</td></tr>
<tr><td>▷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</td></tr>
</table>

2. 능력요건	**① 전문가적 능력** ⅰ)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)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·분석 능력 ⅲ)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
	② 전략적 리더십 ⅰ)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)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)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
	③ 변화관리 능력 ⅰ)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)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)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
	④ 조직관리 능력 ⅰ)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ⅱ) 업무개선능력 ⅲ) 자원활용능력
	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)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ⅱ)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)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
3. 특별요건	① 자격증 : ■ 무 □ 유 ② 외국어 : 해당 없음 ③ 정보화능력 : 해당 없음 ④ 기타 특별요건 ■ 무 □ 유